

1.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4. 4. 22. 김제시장 으로부터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2004. 4. 30. 자치행정 위원회에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2004. 5. 12. 제8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자치행정위원회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가. 제안 이유

- 리·통장의 임기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라 리·통장자녀장학생 선발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리·통장의사기를 진작시키고, 중학교의무교육 시행으로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중학생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김제시리·통장자녀 장학생 선발자격요건을 리·통장으로 “2년이상 근속 한자”를 “1년이상 근속한 자” 로 개정 (안 제3조 제3항).
-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으로 “중·고등학생”을 “고등학생”으로 개정 (안 제7조 및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리·통장의 임기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라 리·통장자녀 장학생 선발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리·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중학교의무교육시행으로 장학금지급 선발대상에서 중학생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문) 오인근, 임영택, 김광선 위원
 - 3쪽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난 제3조 제3항중 미평점 또는 50점 이상이거나 는 무슨 뜻 인가요?
 - 일반장학생의 자격 요건중 대학생의 경우 현행 우평점 또는 80점 이상인 자로 한 것은 범위가 너무 넓어 다수의 신청자가 탈락되고 심사에도 어려움이 있어 85점 이상으로 강화했으면 하는데요?
- (답변)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
 - 3쪽 신구 조문대비표 제3조제3항의 50점은 현행조례가 잘못 제정되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일반장학생 자격요건 강화에 대하여는 폭이 좀 좁아지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5. 토 론 요 지

- 오인근, 김광선, 임영택 위원

- 일반장학생의 자격요건 강화에 대하여 찬반 양론이 있었으나 학업 성적외에도 5개 항목의 가산점을 반영하도록 되어있는 현행 조례로도 심사요건이 충족되므로, 심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하여 원칙(조례)을 고칠수 없어 추후 시행상 문제가 발생시 검토키로 하고 원안에 합의.

6. 심 사 결 과

-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9명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8명, 기권1명으로 원안 가결.